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52호 2023. 9. 7.(목)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3-1233호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1
- 사천시 공고 제2023-1234호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입법예고----- 12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52호

사천시 공고 제2023-1233호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 제2항)
 -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 나. 법령 용어 정비

사 천 시 공 보

제852호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161, FAX : 831-6033)

사 천 시 공 보

제852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 치 법 규 명 :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852호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 .

제 출 자: 도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연장(안 제2조제2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사 천 시 공 보

제852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9. 7. ~ 2023. 9. 27.(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852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법 제47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 경비</p> <p style="padding-left: 20px;">2. ~ 4. (생략)</p>	<p>제1조(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 ----- ----- ----- ----- -----.</p> <p>제2조(설치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② ----- 2028년----- ----- ----- ----- -----.</p> <p>제4조(세출) ----- ----- -----.</p> <p style="padding-left: 20px;">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p> <p style="padding-left: 20px;">2. ~ 4. (현행과 같음)</p>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垔)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②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채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③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5. 17., 2011. 4. 14.>

④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4. 14.>

⑥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⑦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4조, 제58조와 제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1. 제6항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제6항에 따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1. 4. 14.]

사 천 시 공 보

제852호

사천시 공고 제2023-1234호

「사천시 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8조 제3항)

-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161, FAX : 831-6033)

사 천 시 공 보

제852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852호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 .

제 출 자: 도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연장(안 제8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사 천 시 공 보

제852호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9. 7. ~ 2023. 9. 27.(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852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u>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2028년</u>----- ----- ----- ----- ----- -----.</p>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개발법」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개정 2010. 3. 31., 2021. 12. 21.>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 2의2.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하여 납입된 금액
3.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제85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9.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10. 차입금

11.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2.>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

4.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